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

제3조(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훈련과정”이라 한다)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이나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2.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다만, 생애 재설계 등을 목적으로 중장년층 전직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정규 교육과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개설·운영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육과정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대학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
 -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에 따른 계열별 구분 중 소계열 상 이학·공학에 해당하는 전문학사·산업학사·학사과정
4.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5.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훈련 과정
6. 그 밖에 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